



특허청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7. 8.(금) 09:00	배포 일시	2022. 7. 8.(금) 08:30
담당 부서	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주연 (042-481-5265)
		담당자	사무관 강승구 (042-481-8343) 주무관 이동은 (042-481-5268)

특허청, 상표심사지원 사업 공정성, 전문성 높인다.

- 특허청,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안 발표 -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8일 발표했다.
- 해당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, 7월말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.

【 상표심사지원 사업 】

- 상표심사지원 사업은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·분석,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'03년부터 시작
-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,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.
- 먼저, 특허청 전·현직원 및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 및 사업참여를 제한하여 이해충돌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, 전문기관 조사원·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 및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하고, 상표조사,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·경력요건을 명시하여 사업수행 기관 및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.

- 마지막으로,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게 다음년도 사업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물량배분체계를 개편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품질을 제고해야 하는 유인을 강화하였다.
-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이번 고시개정시안은 상표출원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 및 사업참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안”이라고 하면서, “상표심사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



① 특수관계인 임원 재직법인 등록배제

- 특허청 직원·현업에 종사 중인 변리사 및 변리업계에 종사 중인 2년 이내 특허청 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(이하 특수관계인)이 대표 등 임원인 경우를 전문기관 등록 소극요건으로 추가

② 조사원 등 전문기관 인력 자격요건 강화 (안 제4조·제9조·별표2)

- 조사원·분류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관련 교육 이수 및 역량 평가 통과(조사원 한정) 요건 추가
 - (교육이수)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지식재산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하는 상표제도 관련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
 - (역량평가) 조사원 자격 획득 요건으로 특허청이 시행하는 역량 평가 통과를 규정

③ 기관별 사업수행 요건 명확화(안 제18조·제19조)

- 전문기관의 적절한 사업준비를 위해 조사사업 및 분류사업 참여 시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요건·경력요건 구체화

④ 사업물량 배분방안 개편(안 제22조 및 제26조)

- (개정내용) 사업 품질평가 및 기관 역량평가 순위에 따라 배분되는 물량 비중 증가
 - 순위별로 희망물량을 확보하는 방식 도입 등 경쟁체계 강화로 품질평가·역량평가 상·하위 기관간 배분물량 격차 증가
 - 사업 품질평가 결과가 '미흡'인 기관은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 가능